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
------------	----

제출년월일 : 2001. 7. 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공사장일반폐기물”에 대한 배출·운반·처리방법 등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분리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함 (제2조 내지 제18조의2)
- 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함(안 제2조제10호)
- 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자가 운반 또는 택배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 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배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수집·운반하는 자도 처리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2001. 5. 25~6.14(주민 제출의견 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8호및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공사의 경우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폐기물을 말한다.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2, 제4조제2호,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류 별 성상별로 분류하여 제9조제1항에 의한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뮤은후 배 출하거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 하거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 또는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에 그 배출자에 대하여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수집·운반하는 자는 처리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10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신고 필증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집·운반하는 자와 배출자가 다를 경우에는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그 신고한 폐기물이외에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폐기물은 운반하는 자는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하며, 관계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의 대행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대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
2.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처리자는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별표4]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계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13조제3호및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자 제9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신고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폐기물종류	배출량		
	발생사유	배출일자		
운반자	성명(업소명)	차량번호		
	운반장소	운반량	(톤)	운반일자
처리자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 제3항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사 하 구 청 장 귀하

-----철-----취-----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신고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폐기물종류	배출량		
	발생사유	배출일자		
운반자	성명(업소명)	차량번호		
	운반장소	운반량	(톤)	운반일자
처리자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 제3항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주의사항 :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운반중에 훑날리거나 훑려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 차량에 덤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확인서(배출자확인용)

신고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폐기물종류	배출량		
발생사유	배출일자		
운반자	성명(업소명)	차량번호	
	운반장소	운반량	(톤) 운반일자
처리자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 제3항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운반자 : (인)
처리자 : (인)

귀하

-----절-----취-----선-----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확인서(신고기관 제출용)

신고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배출장소)	(전화번호 :)	
폐기물종류	배출량		
발생사유	배출일자		
운반자	성명(업소명)	차량번호	
	운반장소	운반량	(톤) 운반일자
처리자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6조의2제3항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반자 : (인)
처리자 : (인)

사하구청장 귀하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p> <p>1. ~ 4. (생략)</p> <p>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6. ~ 7. (생략)</p> <p>8. "음식물류폐기물"(이하 "음식물쓰레기"라 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한다.</p> <p>9.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퇴비화·사료화·연료화 및 기타 용도로 재생·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신설〉</p>	<p>제2조(용어의 정의)</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공사의 경우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폐기물을 말한다.</p> <p>6. ~ 7.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10.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p>
<p>제3조(폐기물의 감량화)</p> <p>①~②(생략)</p> <p>③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로서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라 한다)는 동 나목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된 음식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p>	<p>제3조(폐기물의 감량화)</p> <p>①~②(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고시)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 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었 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배출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의 무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략) 1. (생략)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3조 제3항에 의한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 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담아 별도로 보관·배출하 여야 하며 공동수집장소에 악취, 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제〉</p>
<p>제5조의2(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구청장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 500세 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 레기 감량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53조 규 정에 의거 시설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삭제〉</p>
<p>〈신설〉</p>	<p>제6조의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류별 성상별로 분류하여 제9조제1항 에 의한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끓은 후 배출하거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 또는 불법처리 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에 그 배출자에 대하여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p> <p>③ 제2항에 의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수집·운반하는 자는 처리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10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신고필증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집·운반하는 자와 배출자가 다를 경우에는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그 신고한 폐기물이외에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폐기물은 운반하는 자는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의 대행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 2.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중간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 등)①(생략) ②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소규모건설폐기물용 봉투에는 가정의 집수리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공사 착공시부터 완료때까지 발생하는 양)의 건설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p>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처리자는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별표4]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p> <p>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 등)①(생략) ②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생략) 1.~2.(생략) <u>3.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용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20ℓ봉투 기준)의 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u> <u>4.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와 그 부산물을 구청장이 수탁하여 처리할 때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생략) 1.~2.(생략) <u><삭제></u> <u><삭제></u></p>
<p>제16조(수수료의 감면)(생략) <u>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u> 2.~3.(생략)</p>	<p>제16조(수수료의 감면)(현행과 같음) <u>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u> 2.~3.(현행과 같음)</p>
<p>제17조(폐기물의 처리방식등 개선) <u>①~③(생략)</u> <u>④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3조제3항에 의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용기로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17조(폐기물의 처리방식등 개선) <u>①~③(현행과 같음)</u> <u><삭제></u></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 등)</p> <p>①(생략)</p> <p>1.~2.(생략)</p> <p><u>3.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지역단위</u> <u>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쓰레기만을</u> <u>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u> <u>때</u></p>	<p>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 등)</p> <p>①(현행과 같음)</p> <p>1.~2.(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제18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구</p> <p><u>청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u> <u>법률 제26조제1항에 의거 지역내에서</u> <u>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u> <u>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자에</u> <u>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음자</u> <u>등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삭제></u></p>